

보도시점

별도 공지

배포

2026. 9. 1.(화) 국무회의 종료시

「2026년 세제개편안」 정부안 확정

정부는 지난 8.3.(월) 「2026년 세제개편안」 발표 후 11개 세법 개정 법률안*에 대해 부처협의(8.4.~8.14.) 및 입법예고(8.4.~8.20.)를 실시하였고 8.27.(목) 차관회의를 거쳐 금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였다.

* 국세기본법, 국세징수법, 조세특례제한법,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, 소득세법, 법인세법, 상속세 및 증여세법, 종합부동산세법, 부가가치세법, 농어촌특별세법, 관세법

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실거주 1주택의 기본공제 금액은 14억원으로 우대하되 비거주 1주택의 기본공제 금액을 12억원으로 현행 유지하고, 세 부담 상한은 150%로 현행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, ISA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및 납입한도를 현행 유지하고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가입이 가능하도록 수정되었다.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1개 세법 개정법률안은 9.3(목)까지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.

금일 의결된 세제개편안 중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당정간 논의 등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기 국회 심사과정에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.

【첨부】 2026년 세제개편안 수정사항

담당 부서	세제실 조세정책과	책임자	과 장	최진규 (044-215-4110)
		담당자	서기관	이원준 (wonjun220@korea.kr)

1. ISA 개편(조특법 §91조의18)

당 초 안	수 정 안
☐ ISA 계약기간, 납입한도, 일몰기한 등 정비 ○ (계약기간) 최초 3년 계약, 총 계약기간 5년 * (현행) 최소 3년, 최대 계약기간 제한 없음 ○ (납입한도) 연 2천만원, 총 1억원 - 연 납입한도 미사용분 이월 불가 * (현행) 연 납입한도 미사용분 이월 ○ (일몰기한) '29.12.31. * (현행) 일몰기한 없음	☐ 현행 유지

〈수정이유〉 국민 자산형성 지원

2. 생산적금융 ISA 신설(조특법 §91조의29 신설)

당 초 안	수 정 안
☐ 생산적금융 ISA 신설 ○ (계약기간) 최초 3년 계약, 총 계약기간 10년 ○ (납입한도) 연 2천만원 총 2억원 - 연 납입한도 미사용분 이월 불가 ○ (일몰기한) '29.12.31. ○ (특례) 이자·배당소득 비과세 - (청년형 ISA) 일정 소득 이하 청년 가입자에 납입금 10% 소득공제 추가 지원 ▪ 청년형 ISA - 청년미래적금 중복 가입 불가	☐ 지원 확대 ○ 최소 3년, 최대 계약기간 제한 없음 * 현행 일반 ISA와 동일 ○ (좌 동) - 연 납입한도 미사용분 이월 * 현행 일반 ISA와 동일 ○ 일몰기한 없음 * 현행 일반 ISA와 동일 ○ (좌 동) ▪ 청년형 ISA - 청년미래적금 중복 가입 가능

〈수정이유〉 국민 자산형성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지원

3.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(종부법 §8①)

당 초 안	수 정 안
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* 기본공제금액 조정 * 과세표준 = (공시가격 합산액 - 기본공제금액) × 공정시장가액비율 ○ 1세대 1주택자 - (거주) 12억원 → 14억원 - (비거주) 12억원 → 9억원 ○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* *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- (거주*) 부부 각각 9억원 → 9억원 - (비거주*) 부부 각각 9억원 → 4억원 * 4억원 + (5억원 × $\frac{\text{거주주택 공시가격}}{\text{주택 공시가격 합계액}}$)	☐ 비거주시 기본공제금액 조정 ○ (좌 동) - (좌 동) - 12억원 ○ (좌 동) - (좌 동) - 6억원

〈수정이유〉 1세대 1주택자 및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
 종합부동산세 부담 조정

4.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상한(종부법 §10·§15)

당 초 안	수 정 안
☐ 주택분 및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상한* * 직전연도 총 보유세상당액(재산세+종합부동산세)의 150%를 상한액으로 당해 연도 보유세 부과 ○ 150% → 200%	☐ 현행 유지 ○ 150%

〈수정이유〉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상한률 조정

5. 지방이전·특구입주 세제지원 환류기간 조정(조특법 §145)

당 초 안	수 정 안
☐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세제지원 환류 의무 ○ (환류기간) 감면기간 ○ (환류액) 감면세액*의 30% * 농특세 제외	☐ 환류기간 조정 ○ 지방 이전, 특구 입주·창업·사업장 신설 또는 사업용 유형자산*에 투자를 개시한 과세연도부터 감면기간의 마지막 과세연도까지 *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○ (좌 동)

〈수정이유〉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전 투자하는 과세연도부터 환류기간에 포함

6.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대상 조정(소득법 §129)

당 초 안	수 정 안
☐ 인적용역 사업자 원천징수세율 3% → 2% 인하 ☐ 연말정산 인적용역 사업자*는 현행세율(3%) 유지 *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판매업자·방문판매업자·음료품배달원	☐ (좌 동) ☐ 현행세율 유지 대상 범위* 조정 * 간편장부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판매업자·방문판매업자·음료품배달원은 현행세율 유지

〈수정이유〉 납세협력비용을 고려하여 적용범위 합리화

7.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경과조치 대상 확대 (조특법 §105①,③)

당 초 안	수 정 안
☐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종료에 따른 경과조치* 적용 대상 *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 적용 ☐ (신규건설) 준공 시까지 영세율 적용 - (민자사업) '26.12.31. 이전 실시협약 체결분 - (재정사업) '26.12.31. 이전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 승인 분 ☐ (개량·증설) '27.12.31. 이전 공급 분	☐ 경과조치 대상 확대 ☐ (신규건설) 적용대상 확대 - (민자사업) '26.12.31. 이전 타당성 분석 또는 제안서 검토 완료분 - (재정사업) '26.12.31. 이전에 기본계획이 고시된 것으로서 '27.12.31. 이전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이 승인된 분 ☐ (좌 동)

〈수정이유〉 이미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